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20시 12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 | 3 |
|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| 3 |

비디오물제작업 신고

2023.04.12 09:56 조회수 273 등록자 임수민

- ✓
민원사무명
비디오물제작업 신고

- ✓
민원내용
비디오물제작업 신고

- ✓
관계법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

- ✓
구비서류

 - 신청서
 -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
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
- ✓
처리부서
문화예술과

- ✓
협의부서

- ✓
접수
민원지적과

- ✓
수수료
조례

- ✓
처리기간
5일

- ✓
기타사항

- ✓
흐름도

 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
 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
- ✓
기타참고사항

| | |
|---|---|
| <p>첨부파일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#00aaff; border-radius: 15px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전체(Zip)다운로드</p> |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lex-grow: 1;"> <p>[별지 제20호서식]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1157 hit / 18.0 KB) 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리보기</p> </div> </div> |
|---|---|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